

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(2판)

<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·접촉자관리단, 2020. 4. 12.>

- ◆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**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**하고 있으나, 공개 범위에 대한 **지역별 편차 발생**
- ◆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는 **자체 판단** 사항이나, **불필요한 사회적 혼선***을 해소하기 위해 **권고 성격**의 안내 수립 배포

*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

I 법적 근거

○ 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3. **"감염병환자"**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**증상을 나타내는 사람**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**진단**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**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**을 말한다.

○ **같은 법 제6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**

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,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, **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**하여야 한다.

○ **같은 법 제34조의2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**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이동수단,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**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.
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) ① 감염병에 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**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이동수단,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**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II 공개 범위

① 공개 대상 : 감염병환자

○ **감염병환자**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**증상을 나타내는 사람**으로서 진단을 통해 **감염병이 확인된 사람**(법 제2조제13호)

② 공개 시점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**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**

③ 공개 기간

○ **정보 확인 시 ~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**

④ 공개 범위

◆ **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, 법령상의 제한,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**

○ **(개인정보)** 확진자 동선공개 시 **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**
*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('20.3.9)

○ **(시간)** **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**

*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

○ **(장소·이동수단)** **확진자의 접촉자*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**

- **시간적,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**

*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, 체류기간,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

※ 동거생활, 식사, 예배, 강의, 노래방, 상담 등 비밀(침방울)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

- **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**

* 단,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

- **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,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,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**

* (건물) 특정 층 또는 호실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, 특정 시간대 등

* (상호)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(도로명 주소 등) 확인

* (대중교통) 노선번호, 호선·호차 번호, 탑승지 및 탑승일시, 하차지 및 하차일시

- **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**

*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

- **동선 상에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"소독 완료함"을 같이 공지함**